

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에서 의결된
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 관한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

인

2015년 11월 5일

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85호

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

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성북구청위치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삼선동 5가 411번지”를 “보문로 168(삼선동5가 411번지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